

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청원
검 토 보 고

1. 청원현황

가.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 : 1995. 10. 10. 제95-2호

나. 청 원 인 : 충북 옥천군 청성면 마장리 79-2 옥대근외 384명

다. 소 개 의 원 : 유 재 철 의원

라. 청 원 요 지

· 옥천군 청성면 망월, 신기, 두룡, 마장, 도곡 5개부락 인구 813명은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와 접하고 있는 부락으로 수십년간을 이웃같이 지내고 있어 이번 행정구역조정에 있어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보은군 삼승면으로의 편입을 요망하는 청원임.

마. 청 원 사 항

· 옥천군 청성면 망월리의 4개부락을 보은군에 편입 요망

2. 검토의견

가. 내 용 : 행정구역조정 요망(옥천군 청성면 망월리의 4개부락 → 보은군으로 편입)

나. 검토의견

당위원회에 회부된 본 행정구역조정 청원의 건을 검토한바 이곳 옥천군 청성면 망월, 신기, 두룡, 마장, 도곡 5개부락의 주민들의 모든 생활권과 학구권, 경제권 등에 있어서 현재의 옥천군민으로서 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은군민과 다름없는 활동영역을 가지고 있음은 인지한바와 같이 사실이나

현시점에서의 도단위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청원의 건과 동일한 형태의 행정구역조정 요망문제는 도내 여러지역 단위에서 야기되고 있는 양상에 있고 여러구역이 이와같은 실정에 해당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과거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발생되었던 병폐를 개선해나가고자 현재 이와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일괄적인 행정구역조정계획안이 수립되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일부지역의 문제만이 아닌 충북도전체적인 문제로 받아들여 불부합한 행정구역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인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러한 시.군간 행정구역조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그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일치를 필요로하는 현실인바,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으로는 당해지역 주민투표 또는 설문등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한 의견조사와 아울러 당해 행정기관의 의견 및 시.군의회에서의 찬반등 의견방향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시.군간의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전제조건인 성립시에는 도집행기관에서도 주민불편 해결에 적극성을 가지고 관련관계법령에 대한 제.개정등 신속한 행정적 처리 절차의 완료와 내무부장관의 승인 및 대통령령이 공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지역적 실상을 알려 이러한 주민불편요소가 하루빨리 제거되고 조정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한편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성질의 청원내용인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를 수용하여 집행부에서 조속 처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집행부서에서 '95. 2단계 행정구역조정 추진지침이 시. 군에
시달되어 행정구역 조정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 군별 추진계획에 의거 주민의견이 최대한 존중되고 수렴이 되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후 여사한 지역적 불편요소가 완전제거되어
현실성 있는 지역적, 생활권적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참고자료 : 청원서